

등록번호	도시재생과-8348
등록일자	2022. 4. 29.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구분	비공개(5)

광고물관 리담당	도시재생 전략담당	도시주택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선수진	고경휘	이철	최정규	이재현	
협조자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팀 장 산업팀장	환경남 고병화 김웅겸	검단출장소장 건축팀장	김영춘 김한진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안)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2022. 4.



3-8 옥외광고물

3-8-1 기본원칙

3-8-1-1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3-8-1-2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함), ‘동법 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함),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라 함)에 따른다.

3-8-1-3 본 지침에 제시된 설치기준과 다르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를 거친 후 설치할 수 있다.

3-8-2 기준의 구성과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8-2-1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 설치기준’, ‘광고물 형식별 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기준’ 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세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3-8-2-2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기준’ 은 ‘일반적 설치기준’, ‘광고물 형식별 설치기준’ 에 우선하므로 각 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기준’ 에 따라야 한다.

3-8-2-3 ‘일반적 설치기준’ 과 ‘광고물 형식별 설치기준’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광고물 형식별 설치기준’ 에 따라야 한다.

3-8-3 일반적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8-3-1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제한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개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의료기관 · 약국 ·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로 제한함)인 돌출형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②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③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함)에 접한 업소로서 2 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④ 필로티, 쉼터공원에 접한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는 가로/세로 1미터 미만의 행거형광고물
- ⑤ 하나의 대지에 1개 업소만 있는 경우에 보조로 설치하는 광고물(단, 2개 이내로 제한함)

3-8-3-2 광고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어야 한다.

3-8-3-3 광고물(간판 등)의 바탕면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채도 10이상(한국표준색표집 기준) 원색의 사용은 금한다. 다만, 기업의 이미지(CI)로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진이나 그림을 간판의 바탕면으로 사용할 수 없다.

3-8-3-4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광고물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8-3-5 광고물 등은 교통 ·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3-8-3-6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함) 한글과 병기한다.



3-8-3-7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8-3-8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광고물의 휘도(광원의 밝기)는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한다.
- ② 조명광원 설치하는 광고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과 외부에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 ③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발광조명(네온사인, 점멸방식 등)은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단,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권장한다.

3-8-3-9 옥상광고물, 전자식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할 수 있다.

3-8-4 광고물 형식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8-4-1 가로형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3층 이하에 설치한다.
- ②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판류형은 1층에만 설치 가능하고, 2-3층에 설치하는 경우 입체형 또는 복합형으로 설치한다.(변경전)
- ③ 입체형으로 설치한다.(변경후)
- ④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⑤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정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변경전)~~
- ⑤ 건물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회사명 포함)이나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미관상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변경후)
- ⑥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⑦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⑧ 가로형광고물의 가로는 외벽면의 창호 좌우측 끝선 이내로 하며, 높이는 0.8미터 (입체형인 경우 0.6미터)이하로 하며,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한다.(변경전)

⑧ 가로형광고물의 가로는 업소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미터이내, 세로는 최대 0.5미터 이내로 하며,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한다.(변경후)

⑨ 주요표기요소의 세로크기는 판류형인 경우 간판 세로크기의 1/2이내(40cm), 입체형인 경우 50cm 이내로 한다. 보조표기요소의 세로크기는 판류형인 경우 주요표기요소의 1/3이내(13.3cm), 입체형인 경우 1/4이내(12.5cm)로 한다.(삭제)

3-8-4-2 ~~돌출형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변경전)

①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함)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형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건물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양측단에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는 경우에는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 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 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설치위치는 지상에서 3미터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2층부터 5층 이하에 설치 가능하다. 단, 소형돌출간판의 경우 지면으로 부터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1개 설치 가능하다.

③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 부터 0.8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1층 높이 이내로 하며, 두께는 0.3(소형돌출 간판은 0.2)미터 이내로 한다.



~~④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 두께 · 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설치한다.~~

3-8-4-2 돌출형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변경후)

~~3-8-4-3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형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변경전)~~

3-8-4-3 연립형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변경후)

- ① 건물에 입점하는 업소가 많아 개별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4층 이상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꼭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설치 위치는 건물에 1개(좌측 또는 우측)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면의 도로 또는 꼭각지점에 접한 건물은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표시면적은 가로 5미터이내, 세로 0.5미터 이내로 면적은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돌출폭은 0.3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8-4-4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 ② 1층 입주 점포에 한하여 1개 설치가 가능하며, 광고물 설치 총량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재료는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3-8-4-5 지주이용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5개 이상 업체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보행자용은 3미터),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 (보행자용은 3제곱미터)로 한다.



③ 지주이용광고물은 주변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부지당 1개 설치하며 설치 가능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변 녹지(화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화단)내
2. 건축출입구 주변. 단, 출입구와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인접건물과 만나는 지점. 단, 인접건물측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그림 3-8-1] 지주이용광고물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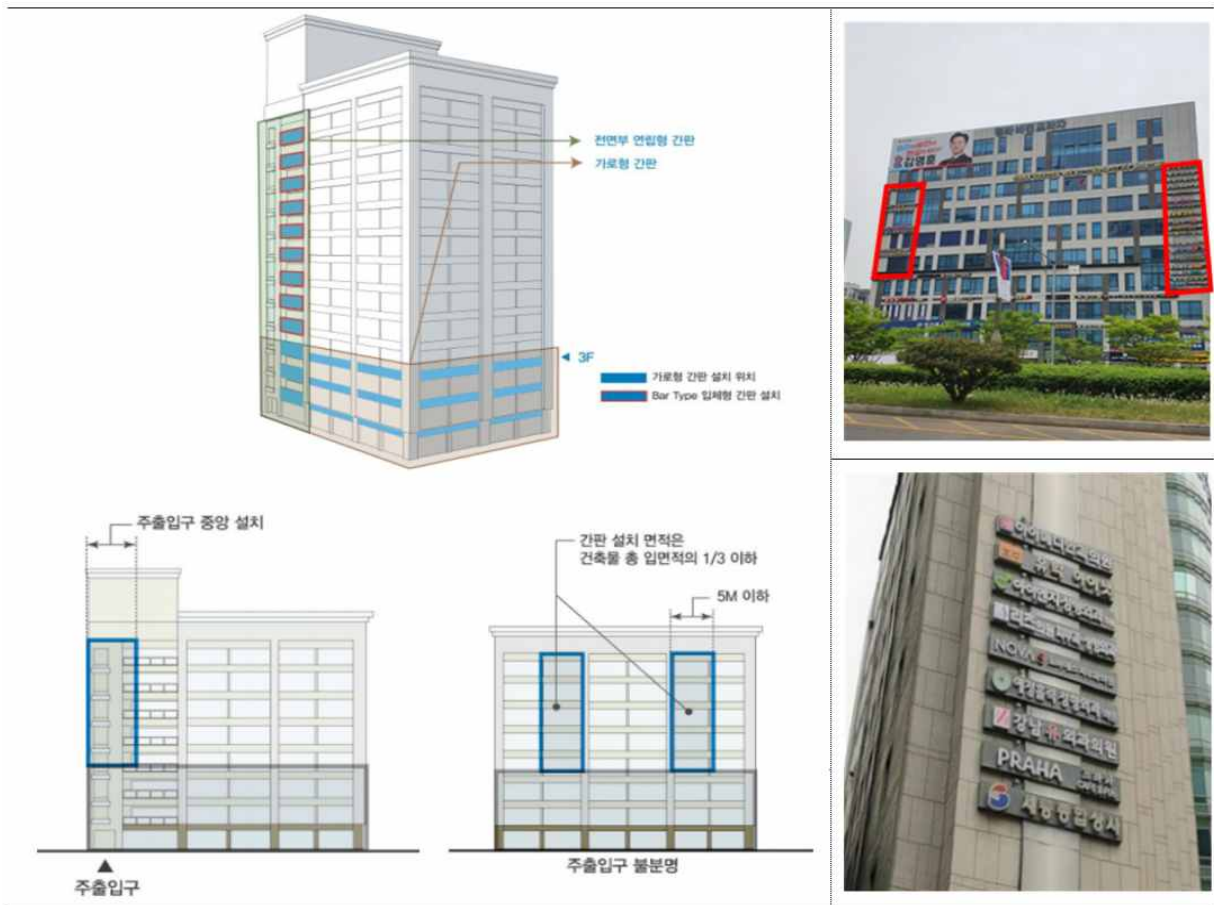
3-8-4-6 차양막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차양막은 1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같은 형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너비는 단위 창문폭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차양막 가로는 창호폭에서 좌우로 +0.1미터 이내로 하며, 돌출 폭은 1미터 이내, 높이는 0.8미터 이내로 한다.
- ③ 차양막은 업소의 광고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의 이미지 등을 소개하는 문자의 표시 혹은 심볼(로고나 마크)만 표시 가능하다
- ④ 인접 업소의 색채와 유사하게 설치한다.
- ⑤ 차양막 재료는 비닐 사용을 금하며, 비와 눈, 햇빛에 강한 소재로 내구성과 색상의 지속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한 캔버스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⑥ 차양막 하단(바닥)면은 막혀 있지 않는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 ⑦ 차양막 내부에는 조명은 설치할 수 있으나, 차양막 외부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 ⑧ 네온 및 점멸방식의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림 3-8-2] 광고물의 표시방법 종합 예시도



<연립형 간판 예시도>



〈표 3-8-1〉 광고물 형식별 설치기준별 종합표

항 목	내 용				
일반적 설치 기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총수량 1개 (단, ①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의 돌출형 광고물, ②연립지주이용광고물, ③도로의 꼭각지 점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④필로티, 썬큰 공원에 접한 건물 저층부에 설치하는 1m×1m미만의 행거형 광고물, 대지 내 1개 업소만 있는 경우 설치하는 보조광고물은 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광고물 형식별 기준	형식	설치위치	설치 총량	규격	표기내용
	가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만 설치 가능 1층 : 판류형, 2~3층 : 일체형 또는 복합형 설치 3층 이하만 설치가능 입체형 설치 건물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 또는 상징도형만 표시 	1개 총수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0.8m 이하 돌출폭:0.3m 이하 가로-업소가로 폭의 80%이내, 최대 10m이내 세로-최대 0.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표기요소의 세로 크기는 판류형:간판 세로크기1/2이내 (40cm) 입체형: 0.5m이내
	돌출형 (삭제)	2층부터 5층까지 설치 가능 정면의 좌측에 1줄로 표시 광고물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 (단, 측면에는 표기 금지)	1개 총수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 0.8m 이내 높이 : 건물 1개 층 이내 두께 : 0.3m 이내 (소형 0.2m 이내) 	정면 가로폭 20m 이상인 경우 건축양측 단에 표시
	연립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을 설치할수 없는 업소당 1개 설치 4층 이상 설치 가능 건물에 1개, 좌·우측 중 1개소만 설치 (최대 2개까지 설치 가능) 	업소당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은2.5㎡이내 -가로 5m이내 -세로 0.5m이내 ·간판이 벽면으로부터 0.3m이상 돌출되지 않게 	
	창문 이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입주 점포만 설치 가능 1층 창문 또는 출입문 1층 이하 가능, 출입면에 표시 	업소당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 ·안전띠 개념으로 폭15cm이하 	투시가 가능한 재료 (반투명 등) 사용
	지주 이용형	5층 이상의 업체에만설치가능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건축주변 녹지 내, 건축 출입구 주변, 인접건축물과 만 나는 지점)	1개 총수량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 5m이내 (보행자용 3m) ·1면의 면적 : 6㎡이내 (보행자용 3㎡) 	-
차양막	1층 업소만 설치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 창호폭 +0.1m 이내 높이 : 0.8m 이내 돌출폭 : 1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소개 문자/심볼만 표기 가능 차양막 내부에만 조명설치 가능 네온 및 점멸방식 조명 금지 	



<표 3-8-2>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별 설치기준별 종합표

항 목	내 용				
일반적 설치 기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총수량 1개 (단, ①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의 돌출형 광고물, ②연립지주이용광고물, ③도로의 곡각지점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④필로티, 쉼터 공원에 접한 건물 저층부에 설치하는 1m×1m미만의 행거형 광고물, 대지 내 1개 업소만 있는 경우 설치하는 보조 광고물은 개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기준	형식	설치위치	설치 총량	규격	표기 내용
	공동 주택 단지내 상가	가로형인 경우, 1층은 지정된 위치(Sign Band) 설치 2층은 창문 상단선 돌출바 (Sign Bar)위에 설치 돌출형인 경우, 좌·우측면에 일렬로 설치	-	돌출형의 경우 가로 : 0.8m 이내 높이 : 건물 1개 층 이내 두께 : 0.3m 이내 (소형 0.2m 이내)	-
	커튼월 광고물	가로형 광고물 설치 내부보 또는 내부판 설치하여 표시 가능	-	가로 : 3m 이내 높이 : 1m 이내	-

3-8-6 행정에 관한 사항

3-8-6-1 택지 및 아파트 상가 공급시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 ① 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택지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② 아파트 상가를 공급하는 자는 상가 공급계약서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 크기 및 위치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3-8-6-2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건축설계 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3-8-6-3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사업승인 등),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을 신청 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3-8-6-4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일치하도록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3-8-6-5 건축물의 분양 ·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 · 임대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명시한다.

3-8-6-6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① 대상지의 위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옥외광고물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준수 내용을 글로 기입하여 제출한다.
- ③ 건축입면에 광고물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에 표기한 광고물 설치도를 제출한다.
- ④ 임대 · 분양 계약서에 삽입할 광고물 설치관련 내용과 관련부서 및 관리자를 표기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

